

이슈브리프

No. 2025-25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과 제언

신소현

연구위원

2025-08-19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하면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5년 7월 현재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국제법 강행규범 위반의 불법적인 침략을 감행한 러시아에 대해 국제 사회는 즉각 규탄했고, 유엔 총회는 그 불법성을 확인하며 철군 요구를 결의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국제적 무력충돌이 계속되던 중, 2024년 10월경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음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2025년 4월 28일 북한 당국은 군대를 파병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가 되면 타방은 군사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기해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및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양국 간의 협약이 침략행위의 불법성을 치유하지 않는다.

북한의 정규군인 북한 군대의 병사는 전투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수중에 들어가는 순간, 국제법상 전쟁 포로가 된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 포로에 대해 국제인도법상의 인도적 대우와 보호를 제공해야 하고, 러·우 전쟁 종료 시 북한군 포로를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 이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 혹은 제3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국제 관행으로 자리잡은 '자발적 송환 원칙'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외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군 포로의 지위와 대우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은 대략 11,000명에서 1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2025년 6월에는 천 명의 공병과 군사 건설 인력 오천 명 정도를 추가 파병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¹ 파병된 전투병력은 전장에서 사상자가 되거나 포로가 될 수 있으므로, 아직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북한군 전쟁 포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제법상 북한군 병사의 포로 지위와 대우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예상되는 포로 석방 및 교환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검토해 본다.

1. 전투원 지위

북한이 공식적으로 참전을 인정하기 전에 북한군의 역할이 불분명한 시기가 있었다. 즉, 북한 군대가 단순히 러시아의 지휘·통제 체계 속에 편입되어 러시아 지휘관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부 조직 내지는 용병(mercenaries)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 것인지가 문제됐다. 용병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상 전쟁 포로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북한군을 용병으로 볼 여지는 없다. 또한 북한 군대가 러시아군에 편입됐었다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북한군 지휘부의 통제가 유지된다는 징후가 여럿 포착됐기 때문이다. 북한군 상장(3성장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중 폭격을 받아 부상당했다는 확인이 있었고,² 북한군 병력의 대거 사망에 북한 고위급 장교단이 파견됐다.³ 이는 북한이 러시아군에 완전히 복속된 것이 아니라 북한군 자체의 지휘·통제 구조가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식적인 참전 인정 전에도 북한군 병사는 직접 전투를 포함한 적대행위를 수행한 북한 군대의 정규군으로서 전투원의 지위를 보유한다.

북한군이 러·우 전쟁에 파병되어 직접 전투에 참여한 것은 북한이 국제적 무력충돌의 당사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러·북 간 상호군사지원조약은 북한군 참전을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북한의 참전은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러시아의 침략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이므로 불법에 대한 공모가 된다.⁴ 또한 이는 러시아의 침략행위 및 그를 통한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의 합병 등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유엔 총회 결의 위반이다.⁵ 침략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조약인 로마 규정에 기해(제8조 bis) 북한 지도부는 침략행위에 고의로 가담한 침략범죄자가 될 수 있다.

2. 전쟁 포로의 지위와 대우

이미 무력충돌의 상황에 접어든 이상, 개전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논의와는 전혀 별개로 국제인도법이 적용된다. 북한군은 러·우 전쟁에서 수행하는 전투를 비롯한 모든 군사 작전에서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한다. 전투원은 전장에서 민간인과 확실히 구별되도록 해야 한다. 민간인과의 구별에 실패한 전투원은 전쟁 포로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전투원은 민간인과 구별하기 위해 제복을 입고 식별, 표장 등을 패용하며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한다. 북한군은 참전 초기 러시아 군복을 착용하고 러시아 신분증을 소지하는 등 그 법적 지위에 대한 혼선을 유도했다. 1907년 헤이그 육전규칙 제23조 (f) 및 추가의정서 I 제39조 제2항은 공격 중 적국의 제복이나 군사표장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제39조 제1항은 무력충돌시 중립국 및 충돌비당사국의 기, 군표장, 기장, 제복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북한군은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채 적대행위를 수행한 것이 국제인도법상 불법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국인 우크라이나군이나 중립국의 제복을 입은 것은 아니어서 포로 지위를 박탈당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러시아군으로 위장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경우에도 포로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본다(추가이정서 I 제44조). 북한이 참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에도 북한군은 구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네바 제3협약은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와 송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⁶ 전투원의 지위는 전장에서 적에게 포획되어 구금되는 경우 자동으로 전쟁 포로의 지위로 전환된다.⁷ 우크라이나 수중에 들어간 북한군은 전쟁 포로로서 일정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 우크라이나는 제네바 제3협약과 제1추가이정서의 체약국이다. 이에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군 포로에게 국제관습법 및 협약상 인도적 대우와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의 심문 동영상을 화면 모자이크나 음성 변조 등 별도의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개했다.⁸ 제네바 제3협약 제13조는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와 일반적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후단은 "... 또한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포로에 대한 보복 조치는 이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전쟁 포로를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는 포로의 심문이나 사적 대화, 개인적 통신 및 기타 사적인 정보를

저장한 사진이나 음성, 동영상 등의 기록물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한다.⁹ 고전적인 전쟁에서 전쟁 포로들이 이동하는 중에 적국의 시민들로부터 집단적인 모욕이나 비방을 듣는 상황을 두고 성문화된 조항이긴 하지만, 현대적인 무력충돌에서 잡힌 전쟁 포로에게도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이 조항의 취지는 적용된다.

만약, 북한군 포로가 자신의 신상과 대화가 세계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전 고지를 받고 동의한 것이었다면, 제13조 위반이 아닌가? 북한군 병사의 동의가 있었다더라도 그 동의를 진정한 자유의사에 기초한 의사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무력충돌의 적대행위 와중에 적의 수중에 들어간 전쟁 포로는 극도로 취약한 존재로서 통상의 협상이나 의사 결정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류가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와 보호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발전시키고 이를 다시 성문화한 국제인도법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전쟁 포로에 대한 대우가 극악했고 그들의 생존이나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받기 힘들었던 오랜 역사적 경험 탓이다. 따라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상의 조약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제네바 제3협약 제13조에 기해 북한군 포로의 신분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025년 5월 천 명 가량의 포로를 교환했을 때, 인터뷰를 했던 북한군 포로 2명의 포함 여부를 주시하고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였던 것은 이러한 우려 때문이다.¹⁰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가능성

1.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포로 교환

전쟁 포로는 적대행위의 종료 시까지 구금될 수 있고, 직접 송환하거나 중립국에서 수용 가능하다(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 그러나 전투 능력을 상실한 포로는 무력충돌 상황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송환할 수 있다. 다만, 형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나 형기를 살고 있는 포로는 적대행위 종결 후라도 계속 구금할 수 있다(제네바 제3협약 제119조). 모든 포로는 반드시 본국(파견국)으로 송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신념에 따라 자신에게 전쟁 수행의 임무를 부여한 본국으로부터 이탈하고 싶은 포로가 있거나 여타의 사유로 본국에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 있다. 보통 전쟁

포로의 교환이나 송환, 세부 절차와 조건 등은 관련 국가 간의 특별 협정이나 협상을 통해 실행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제한적인 규모로 이미 여러 차례 포로 교환을 진행했다.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는 전면적인(all-for-all) 포로 교환을 원했으나 러시아는 응하지 않았다. 2025년 5월부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처음으로 포로 교환에 대하여 협상을 시작했고, 그 결과 천 명 이상의 대규모 포로 송환이 있었다. 2025년 6월까지 민간인과 포로를 모두 합쳐 5,700명 이상이 우크라이나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인 포로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 없다.¹¹ 개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전한 외국인들이 얼마나 러시아에 포로로 잡혀 있는지, 반대로 몇 명의 북한군 포로가 우크라이나에 수용되어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언급한 2명의 북한군 포로가 심문 과정에 한국 당국자를 만났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아직 북한군 포로의 석방이나 송환 사례는 없고,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에는 전원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¹²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5년 1월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로 교환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이래, 국방정보 담당 고위 관리가 한국으로의 송환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2.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여부

1) 남북한 특수관계와 한계

우리나라와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서로 다른 정체를 가진 두 개의 독립된 주권 국가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휴전선 이북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실효적 지배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남북한이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반영한다.

하위 국내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직장 등을 두고 있던 북한이탈주민이(제2조) 북한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국가정보원 조사 후 보호대상자가 되어(제7조) 정착지원을 포함한 일체의 절차에 돌입한다고(제8조-11조) 규정한다. 「국적법」 제3조는 출생 당시에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므로 북한 주민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 자격을 보유한다. 이에 보호대상자로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은 별도의 귀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받는다. 사실상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셈이다. 다만, 모든 이러한 법적 취급은 국내 관할권에 진입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국제 관계에서 다른 국가에게 국내법에 기한 북한 주민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국제 사회와 제3국의 입장에서 북한군 병사는 북한 국적자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포로 수용소에 구금 중인 북한군 포로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2) 북한군 포로의 자발적 송환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한국 헌법상 잠재적으로 국민의 지위를 갖는 북한군 포로에 대한 인도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노력을 살펴본다. 포로는 어떠한 경우에도(특별협정에 기해서도) 그들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고(제네바 제3협약 제7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은 국제인권법과 국제난민법상 강행규범으로 인정된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에서 채택한 자발적 송환(voluntary repatriation) 방식은 이후의 국가 실행에 영향을 주어 일반적인 국제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다(정전협정 제3조 제59항).¹³ 따라서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에 기해 북한군 포로들의 일괄적 교환이나 강제 송환이 국제법 위반임을 들어 협상 단계에서 자발적 송환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북한군 포로의 제3국 송환,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곳으로 가는 선택지도 가능하도록 안전한 경로를 마련하고 국제적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우방국과의 협력 및 ICRC와 UN 인권이사회에 설치된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Ukraine 등 국제기구 등과 협업을 통해 북한군 포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의사가 존중되는 보호 절차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포로의 진실한 자유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통역 협력, 그리고 해당 포로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맞이할지도 모르는 비인도적이거나 부당한 대우, 특히

가족이나 포로 본인에 대한 박해 가능성 등에 대해서 한국의 정보 당국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또한 포로들에 대한 심리 지원 및 법률 자문을 위해 ICRC를 비롯한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와 같은 국제 인권단체나 구호기관과도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

북한군 포로가 자발적 송환의 원칙에 따라 선택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첫째, 한국은 국제법상 불법적인 침략행위에 반대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인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문명국으로서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국제 사회의 리더임을 더욱 분명히 한다.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국제 관계에서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잠재적으로 한국 국민으로 보호받을 기회가 있는 북한군 포로를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의 측면에서 보호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둘째, 북한군 포로 개인은 전투원으로서 가해자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북한군 포로가 단순히 훈련인 줄 알았는데 파병이었다고 한 것처럼, 북한 당국에 의해 강요받은 인권 침해의 피해자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환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북한 정부의 국제법상 불법인 명령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남의 나라 전장에 투입되어 전쟁의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상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군 병사의 처지에 대한 인도적 고려는 보편적으로 요구된다. 한국 정부가 북한군 포로가 충분한 정보 접근과 원활한 통역 절차 등을 거쳐 자유로이 한국이나 제3국 등 송환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동 및 수용 방안과 관련된 외교적 문제들에 대하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저자

신소현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의 연구위원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보보호 기술을 비롯한 신기술 (인공지능, 우주기술, 양자컴퓨팅 등)의 발전으로 생겨난 새로운 공간인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과 관련된 각 국제법 분야의 변화와 발전이다. 무력충돌, 군사, 무기, 사이버첩보 등의 전통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재난, 환경 등 새로운 비전통 안보분야들을 국제 및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관련 국제 및 국내규범의 형성과 변화 및 정책적 이슈들을 융합적으로 연구한다. 세종연구소 사이버안보센터 창립 멤버였으며 사이버안보포럼을 조직한 바 있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였다. 최신 저작으로는 "사이버공간에서 국가의 적대적 허위조작정보 작전에 대한 규율", "우주안보와 국제법", "사이버 억지와 미국의 선제적 방어전략의 국제법적 검토" 등이 있다.

- ¹ 손효주, '북, 러에 3차 파병 "공병 등 6000명 보내기로"' 동아일보 (2025.06.18)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618/131828080/2>> accessed 14 August 2025.
- ² Michael R. Gordon, 'Senior Korean General Wounded in Recent Ukrainian Strike, Western Officials Say' *The Wall Street Journal* (21 November 2024) <<https://www.wsj.com/world/senior-north-korean-general-wounded-in-recent-ukrainian-strike-western-official-says-c138121b>> accessed 5 August 2025.
- ³ 손성원, "'북한, 러 파병 군인 대거 사망에 고위 장교 파견"... 북한군, 사기 저하 흔적도' 한국일보 (2025.01.0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315270001495>> accessed 5 August 2025.
- ⁴ 북한이 직접 참전하여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모를 넘어 불법행위의 주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Marko Milanović, 'North Korea's Troop Deployment in the Russian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The DPRK as a Principal or as an Accomplice?' *EJIL:Talk!* accessed 10 November 2024)
- ⁵ Ibid; UNGA,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defending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ES/ES-11/3 12 October 2022)
- ⁶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of August 12, 1949 (adopted 12 August 1949, entered into force 21 October 1950)
- ⁷ Ibid. Article 4; Additional Protocol I Article 44
- ⁸ 장유진, "'생포' 북한군 공개 ... 김정은에 '포로 교환' 제안' MBC 뉴스투데이 (2025.01.14)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76594_36807.html> accessed 18 June 2025;
리차드 김, '우크라이나 생포된 북한군 포로, 한국 귀순 가능할까' *BBC 뉴스 코리아* (2025.01.14)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vglwp5g3pxo>> accessed 18 June 2025.
- ⁹ ICRC, Commentary on the Third Geneva Convention: Convention (III) r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591-596.
- ¹⁰ 이해진, '러-우 포로 교환서 북한군 2명 빠져 ... 한국 땅 밟게 해달라' 조선일보 (2025.05.27)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5/05/27/WCCD4OZIGNDK7PQY6HHWP5BN4M/> accessed 14 Aug 2025.
- ¹¹ Daria Shulzhenko, 'Explained: How Ukraine Negotiates Prisoner of War Swaps with Russia' *The Kyiv Independent* (23 June 2025) <<https://kyivindependent.com/explained-how-ukraine-and-russia-swap-prisoners-of-war/>> accessed 14 August 2025.
- ¹² KTV, '외교부 "북한군 포로, 한국행 원하면 전원 수용"' KTV대한뉴스7 (2025.02.20)
<https://m.ktv.go.kr/news/sphere/T000038/view?content_id=721497> accessed 14 August 2025.
- ¹³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걸프 전쟁(1990-1991), 에디오피아-에리트리아 전쟁(1998-2000) 등.